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32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이종배 · 임종득 · 권영진
곽규택 · 서명옥 · 김기웅
이소희 · 김태호 · 이만희
이종욱 · 김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해체 단계부터 폐자원을 종류별로 꼼꼼히 나누는 ‘분별해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폐자원의 95~98%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공사 기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건물을 일시에 철거한 후 잔해에서 폐기물을 골라내는 ‘단순파쇄’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자원 회수 우수 기업에 대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분별해체 장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해체 산업을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 및 제14조의2 신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원 회수 우수 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별해체 적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분별해체 및 자원 회수에 필요한 설비·장비 구입 자금의 융자 및 보조
3.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4. 그 밖에 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

· 재정적 지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발주 시 우수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그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수기업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 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 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 ----- ----- ----- ----- ----- -----.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 발 가.·나. (생 략) <u><신 설></u>	1.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u>
2.·3.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2(자원 회수 우수 기업 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u>

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별해체 적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분별해체 및 자원 회수에 필요한 설비·장비 구입 자금의 융자 및 보조

3.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4. 그 밖에 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발주 시 우수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그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수기업의 지정 기준, 절차

	<u>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	---